

# 특약 변경 대비표

1. 약관명 : 『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』 특약
2. 변경 시행일 : 2025년 6월 17일 (화)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 내용 :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11 신설에 따른 상품종류, 가입대상, 거래품목 등 확대 적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 (적용범위) (생략)</p> <p>제2조 (예금과목 및 상품의 종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예금의 상품종류는 “금거래계좌”, “스크랩등거래계좌”로 구분합니다.</p> <p>제3조 (가입대상)</p> <p>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<u>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</u>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“전용계좌”를 개설해야 합니다.</p> <p>1~5. (생략)</p> <p>6. <u>(신설)</u></p> <p>제4조 (가입용도 및 목적)</p> <p>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9에 따라 “금사업자”간 “금 관련제품”을 거래하는 경우와 “스크랩등사업자”가 “스크랩등”을 거래하는 경우(추가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입니다.</p> <p>제5조 (예금의 신규 등)</p> <p>① “전용계좌”는 거래 품목 종류별(금 관련 제품, 스크랩등(추가)로 사업자별 한 곳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. (생략)</p> <p>제6조 (가입금액) ~ 제10조 (예금의 전환) (생략)</p> <p>제11조 (매매 대금의 흐름 등)</p> <p>① 매입자는 “<u>금관련제품</u>” 또는 “<u>스크랩등</u>”을 <u>매매</u>하는 경우 (생략)</p> <p>제12조 (우대서비스의 제공) ~ 제16조 (계좌의 해지) (생략)</p>	<p>제1조 (적용범위) (좌 등)</p> <p>제2조 (예금과목 및 상품의 종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예금의 상품종류는 “금거래계좌”, “스크랩등거래계좌”, “<u>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</u>”로 구분합니다.</p> <p>제 3 조 (가입대상)</p> <p>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<u>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·수입하거나 공급받으려는</u>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“전용계좌”를 개설해야 합니다.</p> <p>1~5. (좌 등)</p> <p>6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「관세법」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용역</u></p> <p>제4조 (가입용도 및 목적)</p> <p>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와 제106조의 9와 106조의 11에 따라 “금사업자” 간 “금 관련 제품”을 거래하는 경우와 “스크랩등사업자” 간 “스크랩등”을 거래하는 경우와 “<u>관광사업자</u>”가 다른 <u>관광사업자 또는 “면세점사업자”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경우</u>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입니다.</p> <p>제5조 (예금의 신규 등)</p> <p>① “전용계좌”는 거래품목 종류별(금 관련 제품, 스크랩등, <u>면세점 송객용역</u>)로 사업자별 한 곳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. (좌 등)</p> <p>제6조 (가입금액) ~ 제10조 (예금의 전환) (좌 등)</p> <p>제11조 (매매 대금의 흐름 등)</p> <p>① 매입자는 “<u>금 관련 제품</u>”, “<u>스크랩등</u>”, “<u>면세점 송객용역</u>”을 거래하는 경우 (좌 등)</p> <p>제12조 (우대서비스의 제공) ~ 제16조 (계좌의 해지) (좌 등)</p>	<p>상품의 종류 확대</p> <p>가입 대상 확대</p> <p>가입 용도 및 목적 확대</p> <p>거래 품목 확대</p> <p>거래 품목 확대</p> <p>부칙 추가</p>
<p><b>부 칙</b></p> <p>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	<p><b>부 칙</b></p> <p>(좌 등)</p> <p>이 특약은 2025년 6월 17일부터 기 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</p>	